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부령제382호/85. 1. 17.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7조 각호 및 제28조 각호에 개기한 부분의 도로”를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자동차의 주차용에 공하는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주차대수 40대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 가목 “도로교통법 제27조 각호 및 제28조 각호에 개기한 부분의 도로”를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으로 하며, 동조제3조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제3조제4호 본문중 “노외주차장의 전면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중”을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청서등)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청서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설치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

치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설치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관리소 및 휴게소
- 2. 공중변소등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제5조제1항 본문중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를 “시장·군수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로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를 “시장·군수외의”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를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관리규정승인신청서등)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관리규정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관리규정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3 (관리규정신고등) ① 법 제15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관리규정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관리규정신고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공용중지신고서등)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공용중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공용중지·폐지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별지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여 동조를 제15조로 한다. 제7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영 제6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공동건축물부설주차장부지의 지목변경)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6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목변경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당해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공용된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등)

① 영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부할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장소 및 납

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주차장설치의무면제의 신청인이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 별지 제 4 호서식의 주차장설치의무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노외주차장용도전용허가신청서등) ① 영 제 8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도전용 허가신청서 및 영 제 8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도전용신고서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의 2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용도전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5 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의 2 제 1 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용도전용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 5 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등) ① 영 제12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영 제12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양도·양

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 6 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의무상속신고등) ① 영 제12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상속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권리·의무의 상속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법인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등)

① 영 제12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인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한 때에는 별지 제 8 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합병법인의 권리·의무승계신고등) ① 영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 9 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 7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서의 규모를 종전에는 면적으로 표시하였으나, 이를 주차대수로 표시함(영 제 3 조제 2 호 및 제5호). 나. 주차장의 설치허가·신고,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의 승인신청·신고와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신청등에 관련된 각종 서식을 새로이 정함(영 제 3 조의 2, 제 5 조의 2, 제 5 조의 3, 제 6 조, 제 9 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 조).

다.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소·휴게소와 공중변소등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 4 조제 5 항).

전기설비기술기준령중개정령

동력자원부령제74호/85. 1. 21.

전기설비기술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의 2 제 1 항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장, 사무실, 학교, 병원, 상점 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실, 역사의 대합실 및 자동조명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

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기구수 6 개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등기구 수 6 개이내로 구분한 전등군

의 전등배열이 1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관광사업법과 숙박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이 되는 시설의 객실의 조명전원(타임스위치를 설

치한 입구등의 조명전원을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187조의 2 제 2 항제1호중 “호텔 또는 여관 각 객실의 입구등”을 “관광사업법과 숙박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등”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의 별도 점멸장치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87조의 2 제 1 항제 3 호의 개정규정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1985년 6월1일

이후에 건축허가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1986년 1월1일 이후에 착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장치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7조의 2 제 1 항제 4 호 및 제187조의 2 제 2 항제 1 호의 개정규정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1986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1986년 7월 1일 이후에 착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정한 규모이상의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의무적으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등 건축물의 점멸장치 시설을 개선하여

불필요하게 전력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 사무실등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된 전등중 창에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장치를 하도록 하되, 등기구수 6 개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1 렬로 되어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영 제187조의 2 제 1 항제 3 호).

나. 객실수가 30실 이상이 되는 호텔, 여관 등에는 각 객실의 조명전원을 출입문 개폐용기구 기타 장치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게 함 (영 제187조의 2 제 1 항제 4 호).

〈동력자원부 제공〉

건축설계변경처리지침

건설부훈령제678호/84. 12. 26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이미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 그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법령에 위반된 설계변경금지)

① 설계변경의 내용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및 처분이나 조례에 위반한 경우 이를 허가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한 자가 사후 설계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시장·군수는 그 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위반부분을 자진 시정할 경우 그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조치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허가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3 조 (설계변경처리기준) ① 설계변

경이 건축법제 5 조제 2 항제2호와제 4 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법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다음 각호의 설계변경은 건축법제 5 조제 2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부분의 설치와 변경
2.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굴뚝, 다락(반자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배관피트 및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쿨링타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 제거 및 변경(건축법시행령제100 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되는 것의 설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설계변경은 건축법

제 5 조제 4 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내력벽인 내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미만 및 내력벽이 아닌 내벽(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제외한다)의 변경
2. 내벽에 설치된 창호의 변경
3.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계단의 변경
4. 미관지구외에서 다음 사항의 변경

가. 내력벽으로서 외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의 변경

나. 내력벽이 아닌 외벽의 변경다. 건축물, 담장, 대문의 형태, 색채 또는 재료의 변경

라.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는 기둥)의 중심에서 튀어나온 길이가 1미터 미만인 차면시설 세탁물건조대, 장독대의 설치, 제거 또는 형태, 색채,재료의변경

제 4 조 (설계변경의 허가 및 신고에 따른 확인) ① 설계변경에 대하여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담당공무원 또는 감리건축사가 확인하도록 한다.

② 설계변경에 대한 신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하

되 첨부 도면은 변경되는 부분의 도면에 한한다.

③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및 도서중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첨부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준

공검사때에 일괄하여 건축법령에 대한 적합성의 여부를 확인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건설부령제381호/85. 1. 15.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공시설의 범위) 영 제 2 조 제 1 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우편시설
4. 공동목욕탕

제 3 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① 시장·군수 또는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의 조사를 마친때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택지개발대상토지조사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택지개발대상토지 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도시계획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2 만 5 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축척 5 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입야도

4.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5.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 4 조 (간이공작물) 영 제 6 조제 5 항 제 4 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건조장
4. 엽연초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 5 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① 영 제 7 조제 1 항제 3 호 및 동조제 3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4. 교통에 관한 계획
5.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6. 녹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
7. 대상토지의 단계별 구성에 관한 계획
8.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9.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 1 항의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 만 5 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의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영 제 8 조제 2 항제 3 호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 천500분의 1 인 지형도에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7 조 (택지의 공급방법등) ① 시행자는 영 제 13 조의 2 제 5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 세대 1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 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3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 13 조의 2 제 5 항제 5 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종전의 토지면적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제 8 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 1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제 9 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 2 호서식과 같다.

제 10 조 (권한위임범위) 영 제 18 조제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

[별지 제 1 호서식]

① 지구의 명칭																
② 지정 목적																
③ 위치 및 면적		(천㎡)														
④ 수용가능인구		천세대				천명										
⑤ 주택 현황		인 구			가 구			부족주택			부족율					
		천명			천호			천호			%					
⑥ 토지 이용 현황 (천㎡)	구분	주 거 지 역				녹 지 지 역				기 타						
		소계	논	밭	임야	대지	기타	소계	논	밭	임야	대지	기타	소계	논	밭
⑦ 공법상 제한사항	제한내용	위 지										면적(천㎡)				
	군사시설보호															
	고도제한															
	농지보전기타															
⑧ 녹지지역내 농경지현황 (천㎡)	계	절 대 농 지				상 대 농 지										
		소계	논	밭		소계	논	밭		소계	논	밭				

2803-57 일
84.12.15승인

190mm × 268mm
(인쇄용지(2급) 60g/㎡)

⑨ 지구내 지장물 현황	지장물 내용	존치대상	철거대상	비고	
⑩ 인근 주요 지장물 현황	지장물 내용	지구계와의거리	이 용 계 획		
⑪ 기준지가고시일자		⑫ 기준지가		최저: 천원 최고: 천원	
⑬ 추정사업비 (천원)	계	용 지 비	공 사 비	기 타	
⑭ 간선시설	구 분	기 준		신 설	
		수 량	금 액(천원)	수 량	금 액(천원)
⑮ 종합의견					

첨부서류

- 가. 도시계획도상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 나.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 다.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
- 라.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 마.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택지조성원가산정표

[별 표]

구 분	조성원가구성비목	내 역
직접비	용 지 비	용지매입비(보상비 포함) 및 그 부대비
	조 성 비	용지조성비 및 그 부대비
	조사비 및 현장경비	조사측량비, 설계비, 감정비 및 그 부대비
간접비	공 통 비	연간 예산상의 예정배분액 $\left(\frac{\text{연간공통비 총액}}{\text{연간총사업비}} \times \text{당해지구 사업비 총액} \right)$
	건 설 이 자	○ 직접비 × 우량업체 대출금리 × 건설기간 1/2 다만, 선급공사비에 대하여는 건설기간을 계상한다. ○ 용지비 : 용지매수일(용지비의 50퍼센트 이상 지급일)로부터 착공일까지 우량업체 대출금리로 추가 계상한 금액
	기 타 부 대 비	측량비, 등기비, 분양수속비, 광고선전비, 매각감정료,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비용등

〈별지 2호서식〉

검 사 공 무 원 증

사
진

제 호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검 사 대 상 :
유 효 기 간 :
위 사람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건설부장관 ㉮

2803-6A

81. 4. 1 승인

70mm × 100mm

(인쇄용지(특급) 120g/㎡)

1항 본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1조 (보 고) ① 도지사 (서울특별시 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는 영 제18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갖추어 15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승인서 사본
2. 지적도
3. 계획평면도

② 시행자는 영 제18조제 2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

는 영 제18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갖추어 2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서 사본
2. 실측평면도
3. 신·구 지적대조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 (1984. 7. 16, 대통령령 제11,475호)에 따라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토지를 효

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계획의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아울러 지금까지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행령 부칙에서의 위임사항을 시행령의 개정과 맞추어 본문에서 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자 할 때에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양식을 새로이 정하고, 동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를 명시함 (영 제 3 조).

나.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주택단지의 구성에 있어 제반시책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계획의 개요의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영 제 5 조).

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승인등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예정지구의 범위를 토지면적 3십만제곱미터미만으로 함 (영 제10조).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 반영

건설부지도 420-1313 1985. 1. 23.

본지 1월호에 소개한 바 있는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에 대하여 건설부로 부터 다음과 같이 추가 송부하여 왔기 소개하니 회원 제위께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85. 2. 1
나. 대상건축물

공동주택 (중양난방식), 업무시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숙박시설 (호텔·모텔), 사우나, 목욕

탕, 안마시술소, 수영장등 에너지 다량소비 건축물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시기 건축위원회 의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심의 신청시, 기타 건축물은 신축, 증·개축등 건축허가신청

시에 제출

에너지소비절약계획 세부지침

1. 단열상태

단열취약부위 (예 : 외벽체의 상부

와 콘크리트보의 접합부, 창문들과 그 주위의 외벽체와의 접합부 등)의 열교현상(Cold Bridge) 방지를 위하여 단열성 구조부재(예 : 경량콘크리트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설비용량 산정

설비용량 산정시 과도한 안전율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유발하여서는 안된다.

3. 대형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폐열회수장치

가. 온수보일러를 이용하는 난방 시스템은 그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열교환기를 이용한 간접난방방식, 블리드인(Bleed-in)방식, 온수직접난방방식 등 중에서 에너지효율이 높은 방식을 채택한다.

나. 일반 보건용 공기조화의 경우 설계 외기온도는 여름TAC 2.5% 이상, 겨울TAC 97.5% 이하로 한다(“TAC”는 위험율을 의미한다)

다. 사무소 빌딩등에 가습하는 경우 가능한한 상대습도를 35% 이하로 하여 가습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인다.

라. 온·습도 조절기 부착

- 1) 시스템별, Zone 별로 별도의 온도조절용 Thermostat 를 1개 이상 부착한다.
- 2) 가습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습도조절기(Humidistat)를 설치한다.
- 3) 하절기는 28℃ 이상, 동절기는 18℃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건물은 권장)

마. 공기조화기(AHU)의 배기에는 배기열회수장치(회전재생식 또는 고정식 전열교환기), 히트파이프(Heat Pipe), 런어라운드식 열교환기(Run-Around Coil)등을 설치한다. 단, 다음의 각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다른 에너지절약시스템(VAV(변풍량)방식, VWV(변유량)방식, 열회수형냉동기, 히트펌프(Heat Pump), 축

열시스템등)이 도입되어 있어 배기열 회수장치와의 조합이 곤란한 경우

- 2) 배기열 회수장치의 설치로 인한 에너지소비의 증가분이 회수되는 에너지 절약분을 상회하거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공기조화기 배기를 요구조건이 낮은 장소에 단계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예 : 홀, 창고, 설비기계실, 주방, 주차장 등의 급기로 이용

바. 퇴수계통에는 경제성 검토를 통하여 열교환기를 이용하는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한다. (사우나, 목욕탕, 수영장 등)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주	주소			
	성명		전화번호	
건축사	사업소명		등록번호	
	성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비설계자	기계	사업소명	전화번호	
		성명	기술사등록번호	
		주소	(전문기술분야)	
	전기	사업소명	전화번호	
		성명	기술사등록번호	
		주소	(전문기술분야)	
대지조건	위치			
	면적			
용도	주용도		부속용도	
	건축면적		공사종별	
규모	연면적			
구조			층수	
	부위별	열관류율 (kcal/m ² h℃)	단열재두께 (mm)	단열재종류 및 밀도 (g/cm ³)
단열상태	외벽			
	지붕			
	바닥			
	창문		○이중창 ○복층유리 ○삼중창	유리: 공간층: 유리:
에너지사용기자재	기기명	용량	수량	비고
구분	에너지절약계획(요약기술)			
건축계획	* 1. 배치, 방위, 형태, 개구부, 차양, 태양열이용 등 에너지절약과 관련되는 사항을 기술함 2. 별첨 “에너지소비절약 세부지침”중 “1. 단열상태” 관련사항을 기술함.			
기계설비계획	* 1. 별첨 “에너지소비절약계획 세부지침”중 관련사항을 참조하여 기술함 2. 설비계통도를 첨부함.			
전기설비계획	* 별첨 “에너지소비절약계획 세부지침”중 관련사항을 참조하여 기술함.			
운영관리계획				

사. 중간기에 외기냉방 실시 단, 다음 경우 등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1) 대기오염 등으로 외기에 질이 나빠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 2) 외기 냉방 채용이 연간 에너지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
 - 3) 다른 에너지 절약시스템이 채택되어 있어서 외기 냉방과의 시스템 조합이 곤란한 경우
- 아. 기계실은 최적위치에 충분하고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공기조화실은 중간기

의 전외기냉방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외벽에 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자. 설비용 샤프트(SHAFT)는 장치보다 효율이 좋은 시스템으로의 시설교체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 차. 보건용 공기조화를 위한 공기여과기(휠터)는 정압 손실이 과도하지 않도록 한다.
- 카. 냉·온열원 및 공기조화설비 등의 장비용량은 건물의 규모·성격·용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 타. 냉·온열원 및 공기조화설비 등의 장비·기기는 부분 부하

특성을 포함하여 가능한한 최고의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층별온도격차 해소
 - 가. 세대별 전용면적이 60㎡ 이상의 공동주택에 온도조절기 부착
 - 나. 고층아파트의 난방배관은 상·하향식 절충식으로 실시한다. (3-4개로 구획) 단, 상시 난방을 실시하거나 각 세대별로 필요한 난방유량을 확실하게 분배할 수 있는 유량조정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85년도 문화재 노임단가기준통보

문화재관리국보수 2210-525 85. 1. 24

1985년도 문화재 보수공사에 적용할 문화재 수리기능공의 노임단가 기준이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다 하니 적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985년도 문화재 노임단가 기준

직종명	단가	한식와공	21,670
도편수	16,510	한식와공 조공	13,300
목조각공	14,320	석조각공	16,000
한식목공	13,040	특수화공	15,910
한식목공 조공	9,510	화공	11,750
드잡이공	14,720	한식미장공	13,170

海外情報

샌프란시스코에 脱 〈유리상자〉 건축

과거 30년간에 걸쳐서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네모진 〈유리상자〉 건축이 만들어져 온 샌프란시스코. 23층인 오피스빌딩, 스티븐슨 프레이스가 건설되면 아무래도 이 팬하터화現象에도 종지부가 찍힐 것 같다.

이 빌딩은 市도시계획국에 의해 최

근에 시공된 엄격한 높이 제한의 테두리 안에서 계획된 고층빌딩으로서 破風이 있는 綠色의 동판으로 깎아지른 듯이 얹혀져 있다. 외장재는 프레스캐스트 콘크리트와 핑크색의 프랑스산 대리석. 또 4구석은 계단 모양으로 세트백하고 있으며, 모난 방에

서는 市内와 灣의 다채로운 眺望을 즐기게끔 되어 있다.

설계는 카프란/ 맥론린/ 디아스가 담당. 3만5,000㎡의 임대 스페이스 외에 1층에는 레스토랑 및 통과아케이드가 설치될 예정이다.

(Architectural Record).

건축한지 60년이 된 오피스를 客室數 400室의 호텔로 改修

미국 뉴요크주 버펄로에서, 한번은 日程까지 짜 허물기로 했던, 건축한지 60년이나 되는 늙은 오피스빌딩이, 객실수 400개의 호화 호텔, 하얏트 리젠시로 모습을 바꾸었다.

이 빌딩은 史的建造物의 지정도 받고 있는 제네시 빌딩. 4100만 달러가 소요된 개수공사의 설계는 더 크루젠파트너십이 담당. 내부를 완전히 허물어 내고, 설비를 일신했다. 또 11층

增築建物棟 및 유리를 붙인 아트룸도 건설되었다. 오피스 빌딩이 호텔로서 재생된 것은 미국내에서는 처음이다.

(Architectural Record).